2023. 4. 3.(월) 조간용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4월 2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특별시 서울

보도 자료

담당 부서: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
공정경제담당관

공정경제담당관		최원규	02-2133-5360
공정경제정책팀장		주재영	02-2133-5362
담당자	(착한가격)	정의정	02-2133-5376
	(물가정보)	정영신	02-2133-5359
관련 누리집		http://sftc.seoul.go.kr/mulga/	

사진 없음 ■ 사진 있음 □ 쪽수: 5쪽

서울시, 물가안정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 연말까지 1,500개로 늘린다

<현재 831개>

- 착한가격업소 선정 늘려 고물가 속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 폭넓게 누리는 소비환경 조성
- 업소 지원금 24만원→58만원 늘리고 업소별 물품 맞춤형으로 제공해 동참 유도
- 전통시장 100곳 가격제공 '물가정보 누리집' 장바구니 품목 위주로 개편, 61종→82종
- 시, 고물가 속 장바구니 부담 덜고 저렴한 소비생활 지원하는 방안 지속적 마련

□ 5천 원으로 맛있는 한 끼 식사가 가능한 김치찌개집, 시내에선 몇 만원이 훌쩍 넘는 머리 커트를 단돈 6천 원에 해주는 미용실 등…

서울시가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와 이·미용, 세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'착한가격업소'를 추가로 선정해 시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물가안정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.

□ 이와 함께 동네 전통시장 100곳의 농수축산물 등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'물가정보 누리집'도 장바구니 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알뜰한 장보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.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방안들이다.

<착한가격업소 늘려 저렴하고 우수한 서비스 제공하는 환경 조성 및 알뜰한 소비 지원>

□ 먼저 서울시는 현재 831개(외식업 521개, 기타 서비스업 310개)인 '착한가격업소'를 연말까지 1,500개로 늘리고 업소당 지원금액도 연 24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확대한다.

□ '착한가격업소'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로 '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,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.

○ 착한가격 메뉴 비중, 평균 가격 대비 저렴성, 이용 만족도 등을 심사해 선정하며, 매년 2회 모니터링을 통해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한다.

〈착한가격업소 기준〉

◆ 대상 :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자영업자, 개인사업자 운영하는 업소

※「가맹사업공정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은 지정 불가

◆ 선정기준(100점) : 평가분야별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

- 평가분야 : 메뉴비중(25점), 가격(30점), 이용만족도(20점), 위생(20점), 공공성(5점)

□ 올해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내용과 규모가 바뀐다. 예전에는 업종에 상관없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방역물품을 일괄적으로 제공했는데 올해부터는 업종별로 필요한 물건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.

□ 예를 들어 외식업종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주방세제를 이·미용업계는 샴푸, 세탁업계는 세탁비닐과 옷걸이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. 업소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착한가격업소 참여를 늘리겠다는 계획.

○ 이 외에도 메뉴판, 적외선소독기와 기타 집기류 등 환경개선 소요 비용 일부도 지원해 쾌적한 업소 운영도 돕는다.

〈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〉

구 분	기 존	⇒	확 대
물품지원	▪ 소모품 일괄 지원 (대부분 쓰레기봉투)		▪ **업소별 맞춤(희망)물품 지급** – 쓰레기봉투·주방세제(외식업), 미용장갑·샴푸(이미용업), 세탁비닐·옷걸이(세탁업) 등
환경개선	▪ 인증표찰 지급		▪ **소규모 환경개선 가능** – 메뉴판(착한메뉴 표시), 적외선 소독기·미용가위 등 집기류, 인증표찰 등

□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. 또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제도를 몰라 신청 못하는 업소가 있다면 지역 주민 등이 구청 누리집에 제보하면 심사단이 업소로 직접 연락해 신청 과정을 자세하게 안내해준다.

○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서울시 물가정보 누리집에서 (http://sftc.seoul.go.kr/mulga)에서 확인 가능하다.

< 전통시장 가격제공(3월 31일) '물가정보 누리집'도 장바구니 품목 위주로 개편, 61종 → 82종 >

□ 아울러 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주변 전통시장 농수축산물의 정확한 가격정보를 알려주는 '서울시 물가정보누리집(http://sftc.seoul.go.kr/mulga)'도 장바구니 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31일(금)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.

□ 제공 품목은 기존 사과, 배추, 조기 등 농축수산물(16종)과 한식, 이·미용업 등 외식·개인서비스업(45종) 등 총 61종에서 농축수산물(44종), 가공식품(27종), 음류·주류(6종), 위생용품(5종) 등 82종으로 개편·확대된다. 가격을 제공하는 전통시장도 100곳으로 늘렸다.

○ 밥상에 자주 오르는 파, 콩나물, 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추가됐고, 그동안 비교되지 않았던 고추장, 된장 등 가공식품과 우유, 소주 등의 가격도 제공한다.

□ 시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는 가격 확인이 어려웠던 동네 전통시장의 농수축산물 등 다양한 품목 가격을 손쉽게 비교해 소비자들 선택 폭은 넓히고 더불어 알뜰한 장보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□ 박재용 서울시 노동·공정·상생정책관은 “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우수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, 생생한 물가정보도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등 고물가 시대 속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※ 붙임: 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(행정안전부)

붙임 착한가격업소 선정절차(행정안전부)

1 지정 공고

○ 구청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

2 신청

○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은 구청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
< 신청 제한사유 >

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-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
-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(신청일기준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('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' 확인)

3 현지 실사평가

○ 관할 구청장은 민·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*을 구성하고, 지정기준(평가표)에 따라 평가 실시

* 공무원, 물가모니터단,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

4 지정여부 심사

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히 심사를 실시하여 지정여부를 결정

5 결정 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

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경우 결정사항을 신속히 해당 자영업자 등에게 통보하고, 지정증·착한가격업소 표찰을 교부

① 지정 공고 (시장·군수·구청장)	⇒	② 신 청 (영업자 등)	⇒	③ 현지실사 평가 (공무원·민간 공동)	⇒
④ 지정여부 심사 (시장·군수·구청장)	⇒	⑤ 결정통보 및 지정증 등 교부 (시장·군수·구청장)			